		역신금용 더로 기회			
금응위원회	보도	2019.7.17(수) 14:30시부터	배포	2019.7.17.	함께 하는 성장
책 임 자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선 욱(02-2100-2860)		담 당 자	박 석 훈 사무관 (02-2100-2864)	
	법무부 법무심의관 저 태 서(02-2110-3507)			고 민 지 (02-211(

제 목 : 최종구 금융위원장,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 개최

- 지난 1년간 동산금융자금이 빠르게 늘어나며 초기시장 형성이라는 소기의 정책목표 달성
 - ※ ●전체 동산담보대출은 1조원 돌파
 - ②동산·채권담보(IP제외)의 경우, **年공급액(5,951억원)**은 **7.8배**, 대출잔액 (6,613억원)은 **3.2배** 증가
 - ❸IP금융의 경우 금년들어 민간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
 - 오늘 간담회에서 주요 시중은행장은 동산금융이 우리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던 다양한 사례를 소개
 - ※ (예시) 기술력·성장성기반 여신 확산. 제2금융권 대환 사례 등
 - 오늘 법무부는 『동산·채권담보법』 개정 방안을 발표하였고, 신용정보원은 『동산금융정보시스템(MoFIS)』 구축 방안을 설명
-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이 아직 비중은 크지 않은만큼, 본격적 성장궤도 진입을 위해 은행권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
 - 대한제국시절 '당나귀 담보대출'의 예를 다시 언급하면서, 개척자의 정신으로 기업인들이 금융에 바라는 호소에 응답해달라고 요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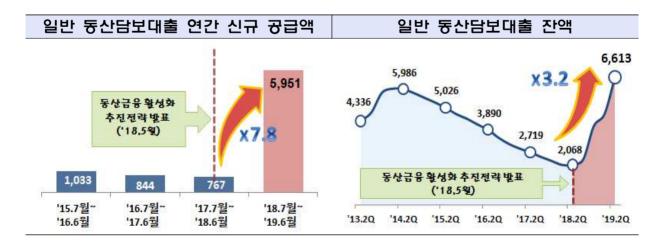
1 간담회 개요

- □ '19.7.17일(수),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
 - 오늘 간담회는 **지난 1년간의 성과**를 토대로 동산금융이 **한 단계** 더 **도약**할 수 있는 **아이디어를 공유**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

- √ **일시 및 장소** : '19.7.17(수) 14:30∼15:40, 은행연합회 중회의실(14층)
- √ 주요 참석자 :
 - o 금융위원장, 법무부 법무실장, 신용정보원장, 금융감독원 부원장
 - ㅇ 은행연합회 회장, 9개 은행장*
 - ※ 기업, 국민, 우리, 신한, 농협, KEB하나, 대구, 부산, 경남은행장

Ⅱ 지난 1년간 동산금융 활성화 성과

- □ (공급규모) 지난해 5.23일 정부정책 마련 이후,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공급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
 - ① 지식재산권(IP: Intellectual Property) 담보대출(잔액 4,044억원)까지 포함한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조원을 돌파('19.6월, 1.07조원)
 - ※ 전체 동산담보 10,657억원 = 동산·채권 등 담보 6,613억원 + IP담보 4,044억원
 - ② 일반 동산담보(IP제외)의 경우, 지난 1년간('18.7월~'19.6월) 신규 공급액은 5,951억원(IP제외)으로 예년 대비 약 7.8배가 증가 하였고, 대출잔액은 6,613억원(IP제외)으로 약 3.2배 증가
 - ※ 신규공급액(억원) : ('17.7월~'18.6월) 767 → ('18.7월~'19.6월) 5,951 대출잔액(억원) : ('18.6월) 2,068 → ('19.6월) 6,613



- ③ IP담보의 경우, 시중은행의 시장진입이 가속화되어 대출액과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는 등 의미있는 전환이 발생
 - ※ 시중은행 IP담보대출 잔액: ('19.4월 이전) 13.8억원 → ('19.6월) 793.2억원

※ (참고)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현황 관련

- 혁신금융(3.21일) 정책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은 '19.4월부터 IP금융을 도입 ('19.4월 이전, 시중은행은 IP담보대출을 사실상 취급하지 않았음)
- 아직 전체규모는 작지만, 지난 3개월간('19.4~6월)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
 잔액(13.8억원 → 793.2억원)과 비중(0.4% → 19.6%)이 빠르게 증가

< 은행권 IP담보대출 잔액(억원) >

구분	국책은행	시중은행	소계	시중은행 비중		
시중은행 IP담보대출 상품 출시 <u>이전</u>						
′19.3월	3,119.7	13.8	3,133.5	0.4%		
시중은행 IP담보대출 상품 출시 <u>이후</u>						
′19.4월	3,134.3	93.3	3,227.5	2.9%		
′19.5월	3,153.4	269.7	3,423.1	7.9%		
′19.6월	3,251.2	793.2	4,044.4	19.6%		

- □ (질적측면) 기업은 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었고, 은행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**사후관리부담**을 경감
 - 동산금융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3.5%p 수준의 금리 인하와 최대 1.5배 수준의 한도상향 혜택을 부여*
 - ※ (사례) A은행은 기존 대출 3억원을 7.9%로 이용하던 자동차 부품업체 B에게 사출성형기기를 담보로 금리(4.4%)와 한도(추가대출 5천만원) 혜택 제공
 - 은행은 **사물인터넷**(IoT) 등을 통한 **사후관리[⊕]**를 통해 **여신관리** 부담과 비용이 크게 경감^❷되고 있음
 - 동산 담보물에 IoT 단말기를 부착하여, 담보물의 위치정보·가동 여부 ·월별 가동율 정보를 확인하고, 정상범위를 벗어난 **담보물의 이동** 또는 **단말기 해제** 시 실시간 이상신호 알림을 제공

< 제천시 관광케이블카 동산담보에 대한 IoT 부착 예시 >







② (예시) 4.6개의 기계담보를 보유한 공장의 1개월간 관리 비용 : (과거) 경비용역 파견 월 240만원 → (현재) IoT 부착 월 9.2만원

- 최근에는 신기술과 현장출동 서비스가 결합된 종합적 동산관리 플랫폼[♠]과 동산담보에 특화된 화재보험 서비스[♠]도 도입
 - ① 이동신호 감지시 은행 영업점 통보가 아닌 "보안업체 先조치(긴급출동 및 현장조사) → 영업점 後보고"로 **완전 자동화**하여 담보안정성 강화
 - ② 기존과 달리 단순화재뿐만 아니라, 기업 휴지위험(기계 고장) 및 기계 도난·분실·파손 등을 보상해주는 동산담보 전용보험 도입

||| 동산금융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우수 사례

- □ 오늘 간담회에서 **주요 시중은행장**은 동산금융을 통한 **중소** 기업에 대한 **우수** 금융 지원사례를 발표
 - "기술력을 담보화"하는 여신관행의 확산
 - ※ (예시) ○○은행은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부문에서 국내 유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A 업체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(기술평가등급 T3)하여 항공발전기 제조기술이 체화된 기계설비를 담보로 운전자금을 지원
 - ② 2금융권 → 1금융권으로 유입되는 통로로서 역할
 - ※ (예시) ▲▲은행은 기기 구입목적으로 제2금융권의 고금리 리스자금을 이용중이던 B 업체에게 동산담보를 통해 구매자금을 지원 → 해당 기업은 이자비용을 크게 절감(7%→3%)하고 신용등급도 상승이 기대
 - ③ 자동차 부품업과 같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산업, 기업에 대한 신용위축의 위험을 완화
 - ※ (예시1) ◇◇은행은 산업침체와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자동차 부품 업체에게 기계기구(너클프레스)를 담보로 설비자금을 4억원을 지원
 - ※ (예시2) ◎◎은행은 원청업체의 신용공여 축소로 어려움을 겪던 다수 (8개)의 납품업체에 대해 매출채권을 담보로 총 48억원 운전자금 지원
 - ④ 기계 외에도 특허, 재고, 농축수산물 등 담보자산의 다변화 (상세 붙임)
 - ※ (예시1) ☆☆은행은 LED제조. 바코드 특허 등을 토대로 IP담보대출 지원
 - ※ (예시2) ◎◎은행은 18만개의 장난감(재고)을 담보로 운전자금 지원
 - ※ (예시3) ○○은행은 가축(한우)을 담보로 송아지·사료매입 필요자금 지원

- □ 동산금융의 초기시장이 어느정도 형성된 만큼,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
 - 특히, 동산금융 활성화의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[□]제도적 취약성 보완, [□]평가인프라 마련, ^③회수시장 육성 등 중점 추진

① 『동산·채권담보법』 개정안 마련(8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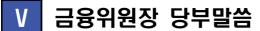
- □ (추진배경) '13.10월, 담보물 실종사고*를 계기로 담보권자의 권리 보호 취약성 등 제기 ⇨ 이후 은행권은 대출공급을 지속 축소
 - *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물건(기계)이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 으로 처분되어 담보권이 있음에도 경매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사건
 - 은행권은 **안정적 담보권리취득** 및 **여신운용**을 위해 담보권자 등에 대한 **권리보호 강화장치 마련**을 촉구
 - □ 법무부·금융위는 합리적 동산금융 법제마련을 위해 '18.9월부터 『동산담보법 개정 TF(위원장 고려대 지원림 교수)』를 운영
- □ (주요내용) 일괄담보제 도입, 개인사업자 이용 확대 등 은행과 기업의 동산담보 이용편의성을 크게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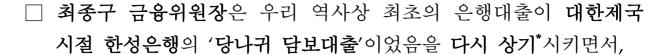
※ 주요 제도개선 사항 (상세내용 붙임)

- 1 일괄담보제도 도입
- ② '상호등기 없는' 개인사업자(상호미등기자 99.8%) 동산담보 활용 허용
- ❸ 장기자금 지원을 위해 담보권존속기간(현행 5년) 폐지
- 4 담보물의 고의적 멸실·훼손시 제재조항 마련
- **⑤** 강제집행시 동산담보권자 요구 없이도 배당금을 당연 배당
- 6 법원 외 민간시장 매각(사적실행)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화
- □ (향후일정) 8월중 정부입법안 마련 ⇒ 연내 법률안 개정 추진

② 동산금융정보시스템(MoFIS*) 구축(8월)

※ MoFIS : Movables Finance Information System(홈페이지 : <u>www.mfis.or.kr</u>)
□ (추진배경)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종류가 다양하고 가치를 추산하기 어려워 정확한 신용보강효과 산출에 애로
□ (주요내용) 동산금융 全 주기(감정평가-대출실행-사후관리-매각)정보를 집중·분석·가공하여 은행의 여신운용에 활용
❶ 기계기구·재고·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통일된 분류코드* 마련
 현재, 다양한 동산을 분류하는 표준코드가 없어, 동산담보 평가-관리-회수와 관련한 정보의 융통과 활용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상황: (분류코드 예시) (기계)수치제어 선반 29223201, (재고)천일염 07022000
② 중복담보여부, 감정평가액, 실거래가액 등 정보 제공
 ※ (예시) A차주가 소유한 수직형머시닝센터(분류코드 25924000) 검색시 : ①중복담보, 이력정보(사고·변형 등) 확인 → ②타 은행의 대출사례 확인 → ③평균감정평가금액 확인 → ④실거래가 및 연수별 평균 가치하락률 확인
❸ 은행은 해당정보를 여신운용에 반영(담보인정비율, 한도·금리 산정 등)
□ (향후일정) 시범운영(6.28일 제한적 오픈)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⇨ 본격 서비스 시행(8월)
③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마련('20년초)
□ (추진배경)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매각시장 활성화가 미흡하여 대출이 부실이 날 경우 채권보전이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
□ (주요내용)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가 대출부실시 담보물 또는 부실채권을 일정조건에 매입하여 은행권의 회수리스크 경감
※ (예시) 1억원의 기계를 담보로 0.6억원(전액담보가정, 담보인정비율 60%)에 실행한 대출이 부실이 날 경우 캠코가 해당 기계를 0.3억원(예시)에 매입
□ (향후일정) 설립방안 검토(~'19년)□ 회수지원기구 설립('20.上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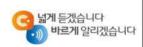


- * '18.5.23일. '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' 발표시 금융위원장 언론 브리핑 내용
- 개척자 정신이 충만하던 당시 은행은 "상인에게 없는 부동산· 귀중품을 요구하지 않고 상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당나귀를 발견하고 자금을 지원해주었다"라고 밝히며,
 - 부동산이 없는 우리 창업·혁신기업도 **값진 것**을 많이 가지고 있고, 금융이 이러한 **동산의 가치를 발견**하고 **적극 자금을 융통**해야 **기업인들의 호소***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
 - * "은행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봐주지 않는다." (19.3.21일, 대통령 주재 『혁신금융 비전선포식』 당시 기업인의 발언)
- □ 나아가, 아직 **동산금융의 비중이 크지 않은** 만큼 **본격적인 성장 궤도**에 오르기까지는 **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**고 강조하며
 - 개척자의 정신으로 우리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적 금융의 확산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

< ※ 별 첨 : 최종구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>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

붙임 1

담보자산 다변화 사례

1 ☆☆**은행의 IP담보대출 사례**

- 특허평가 의뢰부터 여신지원까지의 과정을 일원화하고, 독보적인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혁신기업의 지식재산권(IP)을 담보로 70억원 지원
 - **다수의 특허를 보유**한 모바일 OLED 표면코팅장비 제조기업 ○○에 대해 IP금융 전용상품을 통해 **50억원 지원**
 - ② 개인 휴대단말기 관련 특허 14건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유럽 각국 택배용 PDA 유통기업인 ○○에 대해 온렌딩대출 20억원 지원

2 ○○은행의 재고자산(장난감) 담보대출 사례

○ 장난감 제조업체 ○○에 대한 신용대출 검토과정에서, 창고에 보관 중인 대규모 장난감 재고품을 발견하고 동산담보대출로 권유하여, 18만여개 장난감을 담보로 운전자금 4억원 지원



③ ㅇㅇ은행의 가축(한우) 담보관리 사례

○ 육우사육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△△△△에 대한 대출 심사 시 대표자의 동업계 오랜 경험 및 경영 노하우를 높게 평가하여, 가축(한우)을 담보로 운전자금 39억원을 지원



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 세부 내용

① 일괄담보제도 도입

- (배경) 외국과 달리 포괄담보를 허용하지 않아 독립가치가
 미흡한 자산, 소액자산 등에 대한 담보활용 미흡
- (내용) 기업의 다양한 이종(異種)자산을 포괄하여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-취득-처분할 수 있는 '일괄담보제도' 도입
 - *(예) 특허권이 체화된 화장품 제조기계와 화장품 재고, 매출채권을 일괄 담보화하거나. 작업과정의 유기적 일체를 이루는 집합생산설비 일괄담보화

② 담보권 설정자의 인적범위 확대

- (배경) 현행 법률은 '법인 또는 **상호등기를 한 사람**'에게 동산 담보 설정자격을 부여하여 **개인사업자는 사실상 취급이 곤란***
 - * 전체 개인사업자 중 상호등기자의 비율을 0.2% 수준(법원행정처)
- (내용) '법인 또는 **상호등기를 한 사람**'이라는 담보권 설정자격 폐지 ➡ 개인,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동산담보 활용을 허용

③ 장기자금 지원을 위해 담보권 존속기간(현행 5년) 폐지

- (배경) 현행 법률은 **담보권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제한**함에 따라 은행은 장기자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**대출만기를 최대 4년으로 운용***하는 등 부작용 발생
 - * 담보권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**연장등기**는 '담보권자-담보권설정자'의 공동신청(**공동신청주의**)이 필요 : 만기시점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**담보권이 상실될 우려가 상존**하여 **은행은 만기를 짧게 운용**
- (내용) 장기적 담보대출 필요성, 다른 담보권과의 형평성 측면* 등을 고려하여 담보권 존속기간 폐지
 - * 부동산 담보의 경우 담보권 존속기간 제한이 없음

④ 담보물의 고의적 멸실·훼손·은닉시 제재규정 마련

- (배경)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고의적 멸실·훼손 등에 취약하나 공장저당법*과 달리 이를 명시적으로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어 악의에 의한 담보물 반출 등에 대한 유인이 큼
 - * (참고) 공장저당법은 공장재단 등의 목적이 된 동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
- (내용)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동산담보목적물을 고의로 멸실, 훼손, 은닉하여 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등 처벌

5 집행절차 개선 : 강제집행시 채권자 요구 없이도 배당금을 당연 배당

- (배경) 경매 진행시 동산담보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지더라도 경매 종료 시 배당 없이 담보권 소멸
 - ※ 부동산 경매의 경우 매각으로 소멸하는 채권자는 당연배당 대상에 포함되어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음(민사집행법 제148조)
- (내용) 담보물 강제집행시 동산담보권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도 담보권자에게 당연 배당

⑥ 법원 외 민간시장 매각(사적실행)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화

- (배경) 현행 법률은 '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' 사적실행^{*}을 허용하고 있으나, 그 요건이 불명확하여 민원·분쟁 야기 등으로 인해 사실상 사적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
 - * 법원경매를 거치지 않고 **담보목적물 직접매각, 민간시장 매각** 등을 통해 대출부실시 변제에 충당
- (내용) 사적실행의 **요건을 명확화** : 특히 '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개된 시장^{*}에서 매각'하는 경우도 요건으로 규정
 - * 공개된 시장의 구체적 요건내지 목록은 향후 **동산담보법 시행령 개정을** 통해 규정할 계획

동산금융정보시스템(MoFIS) 개요

- □ (집중정보) 법상 등록된 동산·채권·IP* 외 양도담보·기타동산 정보를 집중대상으로 하며, 동산금융 全주기의 상세정보를 포괄
 - * IP의 경우, 개별법률에 따라 질권설정된 IP담보 관련 정보를 포함

집중항목	주요 내용	집중항목	주요 내용
차주정보	차주별 식별 정보 및 차주 단위 신용공여·신용도판단정보	여신정보	동산물건별 신용공여정보
물건정보	동산물건별 고유번호, 분류 코드, 특징, 소재지 등 정보	모니터링정보	동산물건별 여신 사후관리 에 관한 정보
감정평가정보	동사물건별 감정평가시기 및 평가금액 등에 관한 정보	매각정보	동산물건별 매각방법, 매각· 회수금액 등 정보
등기정보	동산물건별 동산채권담보법상 등기 정보		

□ (활용예시) 개별 차주 및 물건 상세정보 및 유형별·업종별로 집계된 통계정보를 동산금융 여신 운영에 활용



평균감정평가금액, 평가사례 및 평균가치하락률 확인



업종별 주요 동산담보 유형 및 동산금융현황 확인

